

## 간접투자기구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, 동법시행령 제101조 내지 제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펀드명 : 클래스원신종MMF(K-5호)
2. 공시사유 : 약관 변경
3. 변경내용 : 수탁회사 변경등

### [약관변경 대비표]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수탁회사	국민은행	<u>한국증권금융</u>
투자신탁보수 (1,000분의)	(총보수 : 2.0) 운용 : 0.486, 판매 : 1.134 수탁 : 0.2, 사무수탁 : 0.18	(총보수 : 1.92) 운용 : 0.486, 판매 : 1.134 <u>수탁 : 0.15, 사무수탁 : 0.15</u>
부칙	시행일	2009년 4월 16일

4. 기타 : 변경 후 약관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